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요양기관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52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요양기관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0.
3. 회 부 일 :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법정 우대수수료를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감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정책 및 비급여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수준(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Ⅲ. 검토의견: 요양기관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적용

□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¹⁾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설>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 ----- . 이 경우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가맹점에 유리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신용카드가맹점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현행법 제18조의3²⁾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고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³⁾(금융위 고시)은 적격비용⁴⁾만을 반영해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하도록 하되,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⁵⁾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적격비용”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을 의미하며,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 등 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 조정비용으로 구성됨(「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별표4).
- 5) 과거에는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기반으로 가맹점과 카드사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정하였으나, 2012년 체계 개편으로 우대수수료율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연간 매출액 기준 및 우대수수료율의 지속적 개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늘려오고 있음.

[영세·중소가맹업자 대상 카드수수료율 인하 연혁]

연매출액	2012.9.		2015.1.		2016.1.		2017.7.		2018.7.		2019.1.		2022.1.	
	신용	체크	신용	체크	신용	체크	신용	체크	신용	체크	신용	체크	신용	체크
2억원 이하	1.5%	1.0%	1.5%	1.0%	0.8%	0.5%	0.8%	0.5%	0.8%	0.5%	0.8%	0.5%	0.5%	0.25%
2~3억원	일반	일반	2.0%	1.5%	1.3%	1.0%	1.3%	1.0%	1.3%	1.0%	1.3%	1.0%	1.1%	0.85%
3~5억원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1.4%	1.1%	1.25%	1.0%
5~10억원							일반	일반	일반	일반	1.6%	1.3%	1.5%	1.25%
10~3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표 1] 우대수수료율(「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제1항)

구분	연간 매출액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
영세가맹점	3억원 이하	0.5%
중소가맹점	3 ~ 5억원	1.1%
	5 ~ 10억원	1.25%
	10 ~ 30억원	1.5%

※ 연간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은 가맹점별로 적격비용을 산정해 업계 자율상한(2.3%) 범위에서 수수료율을 책정함.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2항⁶⁾은 공공성 등 특수성이 있는 일부 가맹점(이하 “특수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함으로써 가맹점수수료율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⁷⁾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특수가맹점 요건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등으로 결제받으면서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 비용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경우와 관련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다.

7) 신용카드사 특수가맹점 운영 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 개정안은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신용카드업자가 모든 요양기관을 특수가맹점으로 지정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요양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신용카드가맹점을 추가하려는 것임.
- 요양기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었고, 공적 기능 역시 수행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 등 공공성이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음.
- 다만, 우대수수료율 제도는 협상력이 부족한 영세 가맹점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고, 개정안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요양기관까지 모두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교육 등 공공성이 있는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금융위원회는 ① 현행법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제도는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료 업권의 공공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건강보험 수가 등 그 취지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의료서비스 중에는 치

아교정, 미용 시술 등 공공성이 없는 서비스도 있으며, ③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형 요양기관 등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경우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⁸⁾

□ 반면, 대한병원협회 등은 병원 등 요양기관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높은 공공성 및 의료비용에 대한 국가의 통제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13

8) 여신금융협회는 현행 법령에 따른 특수가맹점제도는 적격비용에 의한 수수료율 산정 체계를 훼손하고, 다른 가맹점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야기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추가하여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요양기관 등까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면 적격비용에 의한 수수료율 산정체계가 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① 주유소·충전소, 대중교통, 전기요금 등(全 카드사 공통)

구분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크카드 수수료율
주유소·충전소	주유소, LPG충전소, LPG석유판매점 등	1.5%	1.3%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철도, 여객선 운영사	1.5%	1.5%
전기요금	한국전력	1.0%/1.3%*	1.0%/1.3%*
도시가스요금	서울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코원 에너지서비스 등	건당 120 ~ 150원	건당 120 ~ 150원
통행료	한국도로공사, 남산터널 등	1.5%	1.5%

* 고압아파트 전기요금(1.0%), 일반전기요금(1.3%)

② PG하위영세·중소사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PG사 가맹점번호(全 카드사 공통)

- 현행법상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 PG하위사업자에도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별도의 가맹점 번호로 관리

③ 기타 학교, 병원 등 2012년 적격비용 도입 이전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관행상 특수가맹점으로 관리하는 경우 등(카드사별 상이)

- (학교)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예술대학
- (병원) 서울특별시립어린이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9) 금융위원회 제공 자료